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4. 22 선고 2019가합6733 판결 [주식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14 선고 2021나1051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4. 22 선고 2019가합6733 판결

전문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일명 J)1)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박선진, 육슬기, 김소진

피고1. K

2. 주식회사 L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한필전

변호사 안현희

변론 종결 2021. 3. 18.

판결 선고 2021. 4. 2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L은 원고 A에게 393,661,421원, 원고 B에게 295,454,670원, 원고 C에게 295,454,670원, 원고 D에게 590,909,340원, 원고 E에게 393,661,421원, 원고 F에게 98,206,751원, 원고 G에게 98,206,751원, 원고 H에게 394,495,838원, 원고 I에게 394,495,8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2021. 4.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K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L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K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L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L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 가. 원고 A에게 673,773,621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9.부터,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9.부터, 93,2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393,661,42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원고 B에게 367,122,670원 및 그중 69,92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95,454,6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367,122,670원 및 그중 69,92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95,454,6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F에게 122,068,751원 및 그중 23,2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98,206,75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 G에게 122,068,751원 및 그중 23,2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98,206,75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원고 I에게 490,107,838원 및 그중 93,2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394,495,83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원고 D에게 998,747,340원, 원고 E에게 393,661,421원, 원고 H에게 437,829,1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원주시 P에 본점을 두고, 유스호스텔 및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 A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2017. 1. 10.부터 2019. 7. 9.까지 대표이사였으며, 원고 B, C, D, E, F, G, H, I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아래 표와 같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A	13.33%	7,497
B	10.00%	5,623
C	10.00%	5,623
D	20.00%	11,247
E	13.33%	7,497
F	3.33%	1,874
G	3.33%	1,874
H	13.34%	7,498
I	13.34%	7,498
합계	100%	56,231

한편, 피고 주식회사 L(이하 '피고 L'이라 한다)은 부동산개발·공급·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K는 피고 L과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과 Q의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Q는 2018. 3. 13.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 발행 보통주 56,231주를 매매대금 13,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Q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계약금으로 합계 1,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주식매매계약서

제3조 매매대금산정 및 지급방법

3.1 매매대금의 산정

A	13.33%	7,497	1,733,225,445	173,322,545	1,559,902,900
B	10.00%	5,623	1,299,976,881	129,997,688	1,169,979,193
C	10.00%	5,623	1,299,976,881	129,997,688	1,169,979,193
D	20.00%	11,247	2,600,184,952	260,018,496	2,340,166,456

A	13.33%	7,497	1,733,225,445	173,322,545	1,559,902,900
E	13.33%	7,497	1,733,225,445	173,322,545	1,559,902,900
F	3.33%	1,874	433,248,564	43,324,856	43,324,856
G	3.33%	1,874	433,248,564	43,324,856	43,324,856
H	13.34%	7,498	1,733,225,445	173,322,545	1,559,902,900
I	13.34%	7,498	1,733,225,445	173,322,545	1,559,902,900
합계	100%	56,231	13,000,000,000	1,300,000,000	11,700,000,000

3.2. 매매대금 지급일 및 지급방법

매도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3.1에서 정한 계약금을 각 매수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018. 8. 13.에 3.1에서 정한 잔금을 각 매수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매수인은 본 계약과 관련된 매매대금은 아래 기재된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다. 원고들과 Q 사이의 대금지급확약서 작성

원고 A이 원고들을 대표하여 2018. 8. 13. 피고 K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K는 잔금지급을 2018. 9. 3.까지로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응하였고, Q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대금지급확약서

대표매도인 : 원고 A

매수인 : Q(대표이사 : R)

Q는 다음과 같이 대금지급에 대하여 확약한다.

2. Q는 잔금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대표매도인 원고 A과 Q는 잔금지급일을 2018. 9.

3.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 한다.

2018. 8. 13.

라. Q의 확인서 작성

Q가 위 확약서에 따른 연장된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 하여 원고들과 Q는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확인서

원고들 귀하

Q는 2018. 3. 13.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잔금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은 2018. 8. 13.이었으나 Q가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원고들과 합의 하에 2018. 9. 3.로 잔금일은 한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된 잔금일에도 Q의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치 못하게 되어 부득이 잔금 납부기한을 2018. 10. 15.까지 연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으로 2018. 8. 13.부터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까지 연 5%의 기간이자를 일수 계산하여 잔금과 함께 지급하겠으며, 아울러 2018. 8. 13. 이후에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한 대출금 이자도 함께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3. 만일 연장된 납부기일에도 잔금 전액을 지급치 못할 시에는 원고들의 서면에 의한 계약해제 의사표시 없이도 그 즉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며, 이 사건계약 제10조에 따라 원고들이 계약금을 몰취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9. 3.

위 확인인

Q 주식회사

대표이사 : R

마. 피고 L의 매수인 지위 승계

1) Q가 2018. 10. 15. 원고들에게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 K는 원고들에게 피고 L이 대출금을 받을 수 있어, 그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위 주식매매계약 상의 매수인을 Q에서 피고 L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응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L은 2018. 10. 15.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을 Q에서 피고 L로 변경하면서 잔금 지급기일을 2018. 10. 30.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2) 그러나 피고 L이 2018. 10. 30.까지 원고들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2018. 10. 31. Q에게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Q에 도달하였다.

3) 그 이후, 피고 K는 2019. 6.경 원고들에게 위 주식매매계약을 피고 L과 다시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응하여 원고들은 2019. 7. 2. 피고 L과 아래와 같이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와 주식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이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매도인 : 원고들

매수인 : 피고 L

피고 L은 이전의 Q의 주식매입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계약 승계에 따른 사항을 본 합의서에서 정하고자 한다.

1. 원고들이 피고 L로부터 받을 주식매매에 대한 계약금은 Q로부터 2018년 3월 13.일 지급받은 주식매매계약금으로 갈음한다.

2. 피고 L은 Q의 잔금정산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510,000,000원, 기존 잔금지급일 이후 이 사건 회사에서 매입한 골프카트 매입금액 100,000,000원 합계 610,000,000원을 주식매매대금에 추가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 L은 위 금원을 주식매매계약의 잔금일에 잔금과 함께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매매대금산정 및 지급방법

3.1 매매대금의 산정

이 사건 회사의 거래 기준금액은 20,000,000,000원으로 정하고, 매매대금은 20,000,000,000원에서 거래종결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모든 부채(종결일까지 계산한 미지급 급여, 종결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에 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채무를

포함한다)를 차감한 잔액으로 정한다. 원고들이 피고 L에게 매도하는 주식수와 피고 L이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매매대금 예정액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예정표에 명시된 매매대금 예정액은 거래 기준금액 금 20,000,000,000원에서 거래종결일 현재의 모든 부채금액을 7,000,000,000원으로 예상하여 차감한 예정액이다.

A	13.33%	7,497	1,733,225,445	173,322,545	1,559,902,900
B	10.00%	5,623	1,299,976,881	129,997,688	1,169,979,193
C	10.00%	5,623	1,299,976,881	129,997,688	1,169,979,193
D	20.00%	11,247	2,600,184,952	260,018,496	2,340,166,456
E	13.33%	7,497	1,733,225,445	173,322,545	1,559,902,900
F	3.33%	1,874	433,248,564	43,324,856	43,324,856
G	3.33%	1,874	433,248,564	43,324,856	43,324,856
H	13.34%	7,498	1,733,225,445	173,322,545	1,559,902,900
I	13.34%	7,498	1,733,225,445	173,322,545	1,559,902,900
합계	100%	56,231	13,000,000,000	1,300,000,000	11,700,000,000

3.2. 매매대금 지급일 및 지급방법

매도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3.1에서 정한 계약금을 각 매수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019. 7. 10.에 3.1에서 정한 잔금을 각 매수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매수인은 본 계약과 관련된 매매대금은 아래 기재된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3.4. 잔금 지급시 부채가액의 정산

3.1에 따른 거래종결일에 차감계산할 3.1의 부채총계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3.1에서 정한 매매예정액의 잔금 11,700,000,000원을 우선지급하고 7,000,000,000원에서 금융기관 차입금 및 당일에 확정가능한 부채금액을 전부 차감한 금액을 원고 A(대표매도인)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상기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추후 거래종결일 기준 부채총계액이 확정되면 정산하기로 하며, 잔액이 남으면 상기 3.1의 주식지분율 표에 따라 매도인들에게 안분 지급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원고

A(대표매도인)은 이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피고 L의 계좌로 부족분 전액을 입금하기로 한다.

제7조 진술 및 보장

7.1. 원고들은 피고 L에게 이 사건 계약 3.4. 및 별첨 4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진술 및 보장한다.

별첨 4

(1) 인허가, 이 사건 회사는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정부 인허가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인허가와 관련된 법령과 그 정부 인허가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중요한 측면에서 준수하고 있다.

원고들이 알고 있는 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인허가의 취소, 철회, 정지, 실효, 미갱신 또는 제한 등을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정은 없다.

(3) 위반사항의 부존재.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은 ① 이 사건 회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회사를 구속하는 중요계약의 상대방의 동의, 승인 또는 그에 대한 통지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중요계약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위반, 자동 해지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구성하거나 상대방에게 조기상환, 해제, 해지, 개정, 취소 등의 권리나 권한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5) 법령준수. 이 사건 회사는 각 설립일 이후 그 사업 영위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일체의 법령을 중요한 측면에서 준수하여 왔으며 현재 이를 중요한 측면에서 준수하고 있다. 원고들이 알고 있는 한, 이 사건 회사는 법령위반에 관한 통지나 의사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부기관의 수사, 조사, 감사 등은 진행 중이지 않다.

(7) 미공개 부채의 부존재. 이 사건 회사에는 ① 기준 재무제표에 반영되거나 총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부채, ② 기준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일 이후 과거의 관행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 외에는 어떠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채도 없다.

바. 피고들의 대금 일부 지급 및 잔금 지급의 거절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현재까지 매매잔금 중 6,555,453,300원만 지급하였고, 2019. 7. 12.

원고들에게 '우발채무가 발생하여 잔금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도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전에는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내지 9, 11, 12, 13, 14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요지

1) 잔금 지급 청구 이 사건 합의서 및 계약에 따라 피고 L은 원고들에게 총 12,310,000,000원(= ① 주식매매계약 잔금 11,700,000,000원 + ② 잔금정산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510,000,000원 + ③ 골프카트 매입금 100,000,000원)을 총 매매잔금으로 원고들의 각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들이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으로 9,355,453,300원(= ① 직접 지급한 돈 6,555,453,300원 + ② 주식회사 S이 대신 지급한 2,8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2,954,546,700원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잔금 2,954,546,700원을 원고들의 지분별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A	13.33%	393,661,421
B	10.00%	295,454,670
C	10.00%	295,454,670
D	20.00%	590,909,340
E	13.33%	393,661,421
F	3.33%	98,206,751
G	3.33%	98,206,751
H	13.34%	394,495,838
I	13.34%	394,495,838
합계	100%	2,954,546,700

따라서 피고 L은 원고들에게 각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K는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매수인으로 피고 L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대여금 청구 원고 A, B, C, F, G, I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A	1	100,000,000	2019. 1. 18.	연 5%	2019. 7. 18.
2	80,000,000	2019. 2. 18.	연 5%	2019. 8. 18.	
3	93,280,000	2019. 3. 11.	연 5%	2019. 9. 11.	
B		69,920,000	2019. 3. 6.	연 5%	2019. 9. 6.
C		69,920,000	2019. 3. 11.	연 5%	2019. 9. 11.
F		23,280,000	2019. 3. 11.	연 5%	2019. 9. 11.
G		23,280,000	2019. 3. 6.	연 5%	2019. 9. 6.
I		93,280,000	2019. 3. 10.	연 5%	2019. 9. 10.

이 사건 회사는 위 각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각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해당 원고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1, 4항에 따르면 피고 L이 위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L이 해당 원고들에게 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K는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매수인으로서 피고 L과 공동하여 원고 A, B, C, F, G, I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단기차입금 지급 청구 2016년경 이 사건 회사에 원고 D은 407,838,000원을, 원고 H은 43,333,333원을 단기대여(이하 '이 사건 단기차입금'이라 한다)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원고 D, H에게 각 단기차입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1, 4항에 따르면 피고 L이 위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L이 해당 원고들에게 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K는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매수인으로서 피고 L과 공동하여 원고 D, H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주장 요지

1) 피고 K의 주장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L에만 해당하고, 피고 K는 당사자가 아니다.

2) 피고 L의 주장 가) 잔금 청구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및 별첨 4에 의하면, 원고들은 '진술 및 보장'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의 부존재, 법령 준수, 미공개 부채의 부존재 등에 관하여 피고 L에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이 사건 골프장 인근 토지의 상당 부분을 체육용지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며, 그 비용으로 발생하는 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이미 체육용지로 변경된 토지 중 발생한 원인자분담금 합계 2,954,430,120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전용부담금과 원인자분담금 합계 2,954,430,120원을 위 잔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피고 L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잔금이 없다.

설령 2,954,430,120원의 공제가 모두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채 실사에 따라 나온 잠정 채무액이 7,226,050,538원으로 원고들과 피고 L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잠정 채무액인 7,000,000,000원보다 226,050,538원이 더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에 대하여 13,750,000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는데도 이 부분은 실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이므로, 이 부분 액수를 잔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대여금 및 이 사건 단기차입금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단기차입금 채권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피고 L은 채무인수를 한 바 없다.

3. 판단

가. 피고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L이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고, 피고 K는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 K가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피고 L의 법인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고, 그 옆에 부동문자로 피고 L의 대표이사 U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거래 규모가 13,000,000,000원에 이르는 바, 이와 같이 거래가액이 큰 계약에서 피고 K가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 K의 성명 내지 날인이 단지 누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갑 제11, 12호증).

②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들과 피고 L 사이의 권리·의무만 규정하는 조항들만 포함되어 있다. 가령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는 "피고 L(매수인)은 위 금원을 주식매매계약의 잔금일에 잔금과 함께 원고들(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 사건 계약서 어디에도 피고 K에 관하여 명시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계약서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법인인 피고 L뿐만 아니라 개인인 피고 K에 대하여서도 그 귀속주체를 인정할 것이었다면, 개인인 피고 K에 대하여서도 권리·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둬으로써 법인 간의 권리·의무와 별도로 구별하였음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과 피고 L은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계약서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법인인 피고 L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계약서의 조항들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과 Q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Q가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Q에게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견서를 제시하였을 때에도, 그 의견서의 수신인은 'Q'로만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도 주식매매계약의 해제 상대방으로 Q만을 지정하였는바, 수인의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 그 의사를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해제의 불가분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민법 제547조 제1항

참조), 원고들로서는 피고 K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갑 제13호증의 2).

④ 원고들은 2019. 8. 20.에도 피고 L에 대하여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에는 '원고들과 Q는 2018. 3. 13.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L은 Q의 매수자 지위를 승계하여 2019. 7. 2. 원고들과 새로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원고들은 Q로부터 피고 L로 주식매매계약이 승계되었다는 전제 하에, 피고 K가 이 사건 합의서 및 계약서상의 채무자라고 별도로 언급하지도 않았다(갑 제16호증).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K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L에 대한 잔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서 및 계약에 따라 피고 L은 원고들에게 12,310,000,000원(= ① 이 사건 계약 잔금 11,700,000,000원 + ② 잔금정산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510,000,000원 + ③ 골프카트 매입금 100,000,000원)을 총 매매잔금으로 원고들의 각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L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들이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으로 9,355,453,300원(= ① 직접 지급한 돈 6,555,453,300원 + ② 주식회사 S이 대신 지급한 2,8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잔금은 총 2,954,546,700원(= 12,310,000,000원 - 9,355,453,300원)이며, 원고들이 피고 L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을 원고들의 각 주식 지분별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A	13.33%	393,661,421
B	10.00%	295,454,670
C	10.00%	295,454,670
D	20.00%	590,909,340
E	13.33%	393,661,421
F	3.33%	98,206,751
G	3.33%	98,206,751
H	13.34%	394,495,838

A	13.33%	393,661,421
I	13.34%	394,495,838
합계	100%	2,954,546,700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L은 원고들에게 위 표 기재 각 미지급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L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원인자분담금 부분

갑 제14, 15, 23, 24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V 회계법인에 이 사건 회사의 부채에 관한 회계실사를 의뢰하여, V 회계법인이 2019. 8. 2.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부채 회계 실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실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골프장에 이용되는 토지의 상당 부분을 체육용지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며, 그 비용으로 발생하는 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이미 체육용지로 변경된 토지 중 발생한 원인자분담금 합계 2,954,430,120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21. 3. 3.자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골프장에 이용되는 토지에 관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에 아무런 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원인자분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 실사보고서에서 보고한 내용만으로는 피고 L이 부담하여야 할 우발채무로 2,954,430,120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L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실사에서 파악한 226,050,538원 상당의 추가 잠정 채무 부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V 회계법인에 이 사건 회사의 부채에 관한 회계실사를 의뢰하여, V 회계법인이 2019. 8. 2.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부채 회계 실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실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부채합계를 7,226,050,538원으로 산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실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회계법인이 작성하여 의견을 제시한 보고문서의 내용인 점, ② 위 실사보고서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우발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우발채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발채무가 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원인자분담금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된 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원인자분담금이 없어, 이 사건 회사에 발생한 우발채무가 7,00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발채무로 226,050,538원이 추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L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T에 대한 13,750,000원 상당의 채무 부분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T이 2020. 4. 27.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차전1659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이 사건 회사가 T에 13,75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위 채무에 관하여 위 실사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발생한 우발채무가 7,00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T에 대한 13,75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고 할 지라도, 원고들의 잔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L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피고 L은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잔금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21.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	393,661,421
B	295,454,670
C	295,454,670

A	393,661,421
D	590,909,340
E	393,661,421
F	98,206,751
G	98,206,751
H	394,495,838
I	394,495,838
합계	2,954,546,700

다. 피고 L에 대한 대여금 및 단기차입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4항에 '거래종결일에 차감계산할 3.1의 부채총계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3.1에서 정한 매매예정액의 잔금 11,700,000,000원을 우선지급하고 7,000,000,000원에서 금융기관 차입금 및 당일에 확정가능한 부채금액을 전부 차감한 금액을 원고 A(대표매도인)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상기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추후 거래종결일 기준 부채총계액이 확정되면 정산하기로 하며, 잔액이 남으면 상기 3.1의 주식지분율 표에 따라 매도인들에게 안분 지급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원고 A(대표매도인)은 이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피고 L의 계좌로 부족분 전액을 입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11,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L이 이 사건 회사의 위 대여금 채무 및 단기차입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계약서에 이 사건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 및 단기차입금 채무에 관하여 채무인수에 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1항에는 '원고들이 피고 L에게 매도하는 주식수와 피고 L이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매매대금 예정액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예정표에 명시된 매매대금 예정액은 거래 기준금액 금 20,000,000,000원에서 거래종결일 현재의 모든 부채금액을 7,000,000,000원으로 예상하여 차감한 예정액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들과 피고 L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전체적인 잠정채무액에 위 대여금채무 및 단기차입금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 L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확정적인 매매대금으로서는 13,0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나머지 7,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회사의 채무가 모두 공제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 L이 원고들에게 그 남은 액수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지, 피고 L로서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여금채무 및 단기차입금채무를 곧바로 인수하여 해당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1항에서 '이 사건 회사의 거래 기준금액은 20,000,000,000원으로 정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3조 제4항에서는 '7,000,000,000원에서 금융기관 차입금 및 당일에 확정가능한 부채금액을 전부 차감한 금액을 원고 A(대표매도인)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들과 피고 L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총 가치를 20,000,000,000원으로 정한 뒤 피고 L이 원고들에게 13,0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00,000,000원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권자들에 대한 각종 채무를 공제하여 실질적인 이 사건 회사의 가치를 정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이와 같이 주식 전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그 주식 매수대금을 정하면서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잠정적 채무의 액수를 미리 산정하여 매수대금을 정하는 것이 거래 관념에 부합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전적으로 인수하여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L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K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교식

판사정지원

판사홍순건

1) 원고 I은 원래 성이 M씨였으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남편의 성인 N씨로 자신의 성을 변경하였다가, 2015. 8. 28.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회복하면서 성도 원래 성인 M씨로 회복하여, 원고 I의 기본증명서 상 현재 성명은 I이다.